

□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 C-ITS 인증기관 업무규정

현행	개정안	사유
제3조 (용어정의) (신설) 제5조 (인증기관의 업무) ① 인증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인증기관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. 인증 또는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. 인증 또는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신설) 4. 인증 또는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에 관한 사항 5.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. 시험소 인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7. 사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. 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(표준심의위원회)	제3조 (용어정의) ⑬ “인증기관 표준”이란 인증 또는 인정 업무에 필요한 국제·국가·단체표준 및 이해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이 없는 경우, 인증 또는 인정 업무를 위해 인증기관 또는 이해관계자가 개발하여 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 표준을 말한다. 제5조 (인증기관의 업무) 제1항 ① 인증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인증기관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. 인증 또는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. 인증 또는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. 인증 또는 인정업무와 관련된 표준 및 규격의 등록 또는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. 인증 또는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.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7. 시험소 인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8. 사후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. 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(표준심의위원회)	- - 표준심의위원회의 의결 대상인 인증기관 또는 이해관계자가 개발한 표준 제·개정 및 폐지에 대한 정의 - 표준심의위원회의 역할인 표준 제·개정 및 폐지 내용 추가 - 기준에 대한 폐지 조항 추가

현행	개정안	사유
① 인증기관은 인증 및 인정업무의 기준 제·개정 및 폐지를 통해 업무의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내에 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. ② 표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1. 분야 및 범위별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. 분야 및 범위별 시험소 인정심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.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·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(인증위원회)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신설) 1. 인증의 승인, 유지, 추가, 변경,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. 인증마크 사용 및 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3.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. 이의 신청, 불만 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. 기술적 쟁점 사항 발생시,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6.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구 7. 인증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8. 인증 분야의 세부분류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	① 인증기관은 인증 또는 인정 업무에 필요한 표준의 등록 또는 제·개정 및 폐지를 통해 업무의 신뢰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내에 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. ② 표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단, 제5조(인증기관의 업무)제1항제4호에서 국제·국가·단체표준 및 이해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은 별도의 심의 없이 인증기관의 규격 등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 1. 제12조(표준심의위원회)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규격에 대한 등록 2. 인증기관 표준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.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·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(인증위원회)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인증심사 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2. 인증의 승인, 유지, 추가, 변경,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. 인증마크 사용 및 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.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. 이의 신청, 불만 처리의 최종 해석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. 기술적 쟁점 사항 발생 시,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7.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요구 8. 인증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 9. 인증 분야의 세부 분류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	■ 인증 및 인정업무에 필요한 기준은 인증위원회 또는 인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 ■ 표준심의위원회의 역할인 인증 및 인정업무 기준의 근간인 표준을 등록하거나 제·개정 및 폐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 ■ 보편화된 다수의 규격이 개정될 때마다 위원회 의결 시 빈번한 위원회 구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의 없이 인증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■ 표준심의위원회의 역할변경에 따른 개정 ■ 표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이관

현행	개정안	사유
8. 제품 품질보증 매뉴얼 및 방침 9. [별지 제29호 서식]의 「담당자 등록 신청서」 10. [별지 제27호 서식]의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」 제44조 (시험소 인정신청 등) ① 제41조(시험소 인정 등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소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[별지 제11호 서식] 「시험소 인정 신청서」 및 첨부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,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. 1. [별지 제26호 서식]의 「대표자 서약서」 2. 법인등기부등본, 고유번호증(사업자등록증) 3. 책임보험가입증서 4. 측정설비 보유 현황 5.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6. 시험실 환경조건 및 유지현황 7. Omniair 시험 결과 보고서(해당 시) 8.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및 성적서 발행리스트 9. [별지 제29호 서식]의 「담당자 등록 신청서」 10. [별지 제27호 서식]의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」 11. 품질매뉴얼, 품질절차서, 품질지침서 등 품질문서 12. 그 외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	6. 제품 구성 및 사양서 7. 제품 품질보증 매뉴얼 및 방침 8. [별지 제27호 서식]의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」 9. [별지 제29호 서식]의 「담당자 등록 신청서」 10. 그 외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44조 (시험소 인정신청 등) ① 제41조(시험소 인정 등)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소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[별지 제11호 서식] 「시험소 인정 신청서」 및 첨부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,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. 1. [별지 제26호 서식]의 「대표자 서약서」 2. 법인등기부등본, 고유번호증(사업자등록증) 3. 전문인배상책임보험증서 4. 측정설비 보유 현황 5.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6. 시험실 환경조건 및 유지현황 7. Omniair 시험 결과 보고서(해당 시) 8.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받은 내용 및 성적서 발행리스트 9. [별지 제27호 서식]의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」 10. [별지 제29호 서식]의 「담당자 등록 신청서」 11. 품질매뉴얼, 품질절차서, 품질지침서 등 품질문서 12. 그 외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	▪ 서식 번호 오름차순으로 정렬 ▪ 정확한 용어로 개정 ▪ 서식 번호 오름차순으로 정렬

현행	개정안	사유
[별표 1] C-ITS 인증심사기준	[별표 1] C-ITS 인증심사기준	■ 심사기준 변경
[별표 1-1] 단말기(OBU) C-ITS 통신심사 기준	[별표 1-1] WAVE 단말기(OBU) C-ITS 통신심사 기준 [별표 1-2] LTE-V2X 단말기(OBU) C-ITS 통신심사 기준	■ 심사기준 변경
[별표 1-2] 노변장비(RSE) C-ITS 통신심사 기준	[별표 1-3] WAVE 한국형 노변장비(RSE) C-ITS 통신심사 기준 [별표 1-4] WAVE 미국형 노변장비(RSE) C-ITS 통신심사 기준 [별표 1-5] LTE-V2X 미국형 노변장비(RSE) C-ITS 통신심사 기준	■ 심사기준 변경
[별표 2] 시험소 인정심사기준	[별표 2] 시험소 인정심사기준	■ 심사기준 변경
[별표 2-3] 시험소 기술심사 기준	[별표 2-3] 시험소 기술심사 기준	■ 심사기준 변경
[별표 3] 인증 심사 결과 판정 기준	[별표 3] 인증 심사 결과 판정 기준	■ 판정기준 변경